

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사이버상담원 채용공고(2022-5호)

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오니,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 우리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응시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을 위해 제출된 서류 중 평가기준과 관계없는 개인 인적사항 등은 심사 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
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
채용분야

- (정부수탁) 청소년상담1388 「청소년 사이버상담 및 모바일상담 운영 사업」의 특정직(사이버상담) 및 기간제(사이버상담) 사이버상담원

직급	채용인원	채용기간*
기간제 (사이버상담) 사이버상담원	4명	○(1명)채용예정일(2022.10.04. 예정) ~ 2023.01.19.(휴직대체) ○(1명)채용예정일(2022.10.04. 예정) ~ 2023.07.31.(휴직대체) ○(2명)채용예정일(2022.10.04. 예정) ~ 2022.12.31.

*계약기간 연장 사유 발생(사업 연장 등) 시 근무평가 등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

NCS직무분야 및 응시자격

NCS직무*	응시자격
청소년 상담복지 (사이버상담)	1.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2.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* 2년 이상인 자 3.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※ 관련분야 : 교육, 상담,심리, 사회사업(복지), 정신의학, 청소년, 아동 등

※ 우대사항 :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인재, 저소득층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 등

※ 상기 응시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"7. 기타사항"에 해당될 경우 채용에서 제외 됨

*실무경력 관련 세부사항은 [별첨1] NCS기반 채용직무명세서 및 [별첨2] 경력환산 기준표 참조

※(참고) NCS 분류체계

채용직무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
청소년상담복지	07.사회복지·종교	02.상담	02.청소년지도	02.청소년상담복지

2 근무조건

□ 근무 장소 : 자택(유선 인터넷접속 근무 환경 필수)

□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

○ 담당업무

- 사이버상담: 채팅상담 및 게시판·댓글상담, 사이버아웃리치 상담 등
- 모바일상담: 카카오톡, 문자, 페이스북 활용한 1:1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등
- ※공통사항: 상담 수요량에 따라 사이버상담 및 모바일상담 업무에 순환배치 될 수 있음

○ 근무시간

근무형태	근무일수	근무시간		비고
24시간 7교대 근무 (1일 4시간)	월 24일 (상담업무 23일, 정기교육 1일*)	근무1	00:00 ~ 04:00	- 토·일 및 공휴일과 무관하게 월 23일 사이버상담 근무 배치 - 법정공휴일의 경우 당직근무 배치 (365일 무중단 시스템 운영) - 각 근무형태에서 근무1~7의 전 근무시간대별 무작위 순환근무 ※배치업무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고정 근무 가능성 있음
		근무2	03:30 ~ 07:30	
		근무3	07:00 ~ 11:00	
		근무4	10:30 ~ 14:30	
		근무5	14:00 ~ 18:00	
		근무6	17:30 ~ 21:30	
		근무7	20:30 ~ 00:30	

***(교육일정)** 매월 3주차 목요일 또는 금요일(13:00~17:00) 집합교육 필참 / **(교육장소)** 집합교육 시 별도 공지

*교육일정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, 변경 시 사전 공지 예정

□ 보수

○ 기준: 2022년도 여성가족부 수탁사업 승인 기준 및 보수 관련 내규에 따름

☞ 연봉(월 평균 급여 120만원 이상*), 기타수당(법정수당 등)

*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

- **접수기간** : 2022년 8월 25일(목) ~ 2022년 9월 7일(수) 16:00까지
- **접수방법** : 온라인 접수(www.kyci.or.kr 좌측 상단 '재택사이버상담원 채용' 메뉴 이용)
- **지원서 작성 방법**
 - 「2022년 5차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사이버상담원 채용」 선택하여 작성
 - 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**응시직종 및 직급 반드시 확인**(제출완료 후 수정 불가)

★ (필독) 응시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

★ 응시지원서 작성 완료 후 '제출'하면 수정 불가

★ 응시지원서 작성 내용과 제출 증빙서류가 일치해야 함(불일치 시 합격취소 가능) ※참조[5. 서류제출]

☞ 원서 기재 시 반드시 **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**에 대하여 작성

☞ 발급된 증빙서류에 **기재된 사항(ex. 근무기간 및 일자, 기관명 등)을 확인한 후 증빙서류와 일치**하도록 지원서 작성 ※참조[7. 기타사항]

★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

① 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② 응시지원서 내용과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(기재 착오 포함)*

(*예: **경력증명서 또는 유급근무 증빙서류상 경력기간 및 근무형태 다른 경우, 경험사항 활동기간 다른 경우, 자격증 번호 다른 경우 등**)

③ [7. 기타사항] 기재된 '합격예정자의 합격취소 관련 사항' 참고

※증빙서류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[7. 기타사항]의 **문의처** 활용

★ 자격 및 어학시험 관련사항은 최종결과물 증빙서류만 인정(*시험 전형 합격사실 및 합격확인서 등은 불인정)

☞ 직무능력 관련 자격사항, 어학시험 관련사항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은 자격증, 어학성적증명서와 같은 최종 결과물만 증빙서류로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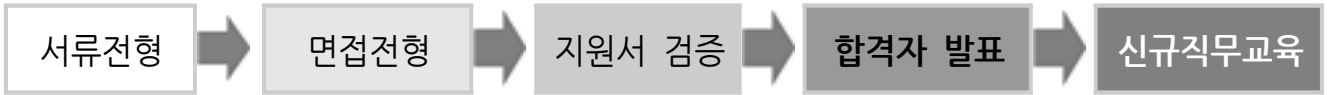
★ 학위사항 작성 기준: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학위의 '**졸업만** 기재 (재학, 수료는 작성 불필요)

★ 경력(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한 경우) 및 경험(비금전적 수행 활동) 사항 작성 유의점

구분	작성 기준	증빙방법* (아래 5번의 서류제출 내용 필독)
경력	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 ※작성 시 제외 경력 아르바이트, 자원봉사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해당기관이 발급한 ①경력증명서(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반드시 표기)와 함께 ②유급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고용보험가입, 건강보험가입, 소득세 납부 등 증명서) 함께 제출 (①경력증명서 + ②유급근무 증빙서류) • 유급근무 관련 증명서 미제출시 경력(유급 근무) 증빙이 불가하여 허위기재에 해당될 수 있음 • 재직 중인 근무처의 경력은 지원서 접수마감일을 최종일로 함 ※시간제나 단시간 근무는 비상근 근무에 해당하므로 작성 시 유의
경험	직업 외적으로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활동증명서, 수료증 등 - 활동 중인 기관의 경력은 지원서 접수마감일을 최종일로 함 ※증빙할 수 없는 경험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

4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

□ 전형 절차 및 기타 단계



□ 전형별 일정 및 세부내용

구분	일정(예정)	대상	세부내용
서류전형	9월 14일(수)	지원자 전체 ※응시자격 미달자 제외	[서류전형 합격자 처리기준] ○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으로 채용예정인원 대비 10배수 이내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9월 16일(금)		○ 합격여부 개별 통보 (메일 등)
면접전형 및 증빙서류 제출	9월 20일(화)	서류전형 합격자	※ 면접전형 참석 시, 증빙서류 제출 필수 [5. 증빙서류] 참조 [면접전형 합격자 처리기준] ○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으로 합격자 결정 ○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2명 이상인 경우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③ ①,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2명 이상인 경우 면접전형의 직무수행능력, 직업기초능력, 인성 및 태도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
응시지원서 검증	9월 20일(화) ~ 9월 21일(수)		○ 허위기재(응시지원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간 불일치 사항 등 기재 착오 포함) 확인 시 최종합격 대상에서 제외
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	9월 23일(금)	면접전형 대상자	[예비합격자 처리기준] ○ 면접전형 결과 8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○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·합격취소·조기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우선 채용 ○ 다만, 순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이며 10명 초과할 수 없음 ○ 예비합격자는 발표일 기준 6개월 간 채용비리 피해자 또는 최종합격자 결원 발생 시 우선 채용 ○ 합격여부 개별 통보 (문자 혹은 메일 등)

□ **전형별 평가기준**

구분	평가항목	평가방법	배점	비고
서류전형	지원자격	정량평가	적격여부 판단	
	자격증	정량평가	30점	정량평가 해당 자격증 별도 표기*
	연구실적	정량평가	15점	
	경력 및 경험 기술서	정성평가	35점	응시지원서 내 4. 경력/경험사항이 아닌 경력/경험사항 '기술서' 를 평가함
	직무수행계획	정성평가	10점	
	자기소개서	정성평가	10점	
면접전형	직무수행능력	-	60점	*{별첨1}의 NCS기반 채용직무 명세서에 따른 세부사항 평가
	직업기초능력	-	20점	
	인성 및 태도	-	20점	

*(참고) 정량평가 해당 자격증 : 청소년상담사, 사회복지사, 정신보건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사, 상담심리사(한국상담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(한국상담학회),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임상심리학회)

□ **최종합격자 신규직무교육(필수 참석)**

- 교육대상 : 최종합격자
- 교육예정일 : 2022. 10. 4.(화)
- 교육장소(예정)* : 부산 본원 (*코로나-19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)

※ 상기에 기재된 채용 관련 일자 및 장소 등 모든 사항은 기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응시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는 **3개월 내 발급한 것으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시 제출**

※ 제출된 증빙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고, 응시지원서 기재사항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원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**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**

※ 채용절차 중 수집한 증빙서류 등의 정보는 채용서류 반환 신청 시 반환하며,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채용절차 종료 시 파기

구분	증빙항목	제출서류	비고
공통 (필수)	학위사항	최종학력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	- 기타 재학/수료 등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
해당자 제출 (지원서 기재 사항)	직무관련 교육사항	해당 교육과정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, 교육과정수료증 등	
	경력사항	1. 경력증명서(재직기관 발급) 2.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(고용노동부 발급)	-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소득세납부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체가능 - 경력증명서로 증빙되는 근무기간과 유급근무 증빙서류로 증빙되는 근무기간이 지원서 기재사항과 동일 해야 함
	경험사항	해당 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활동증명서, 수료증 등	- 활동증명서 또는 수료증 등으로 증빙되는 활동기간이 지원서 기재사항과 동일 해야 함
	직무능력관련 자격사항	자격증사본	
	연구실적	연구물 제목 및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, 해당연구물이 게재된 간행물 부분	- 학위논문 포함(학위논문은 단행본 연구실적이 아닌 학위논문에 해당하므로 지원서 작성 시 유의)
	어학시험 관련 사항	어학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	
	한국사능력 검정시험	자격증 사본	
	장애인	장애인증명서	
	기타 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유공자 :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•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•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•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• 다문화가족 : 가족관계증명서 • 지역인재 : 학사졸업증명서 	- 각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제출 -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가능한 경우 지원서에 기재

항목	내용
국가유공자 (10% 5%)	- 10% 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보훈청 발급) 가점비율 10% 대상자 - 5% 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보훈청 발급) 가점비율 5% 대상자
장애인 (5% 3%)	- 5%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- 3%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
지역인재 (3%)	-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(사이버, 디지털대 등 평생교육시설 제외) * 수도권 : 서울, 경기, 인천 / 학사출신학교 기준
저소득층 (3%)	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한부모 가족 (3%)	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북한이탈주민 (3%)	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다문화가족 (3%)	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가족
한국사능력 (3%)	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(1급 및 2급) 등급 이상자
청년인턴 경력자 (3%)	- 본원 청년인턴 경력자 - 서류심사 전형에만 적용
어학시험우수자 (5% 3%)	- 각 시험 별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하며, 복수의 어학시험 성적 보유자의 경우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인정함 - 서류심사 전형에만 적용

※가산점 비율(%)은 각 전형별 총점(100점)에 대한 비율이며, 가산점 각 항목을 합산하되 각 전형별 총점의 10%까지 인정함(최고 10점)

※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가점 적용을 판단함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채용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지원서 작성 바람
 - 응시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, 지원자와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- 응시지원서 기재사항 중 증빙서류와 불일치 사항이 있을 경우 허위기재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 -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원서 작성 시 서류 발급 등을 사전 확인 후 작성 필요(사전에 증빙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 증빙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)
- 편견요소(성별, 나이, 학교명 등)와 관련된 내용을 직·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
-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(불합격 처리)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원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
- 겸직 관련 참고사항

★ 사이버상담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,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가함

- ① 겸직 허가 신청 대상 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
- ② '①'의 수입이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(단, ①, ② 사항 모두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겸직이 제한 될 수 있음)
 - ㉠근무시간 및 겸직 업무 종사 시간의 합이 주52시간,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로 인해 사이버상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
 - ㉡겸직대상 업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하여 사이버상담 업무 및 청소년상담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
□ 합격예정자의 합격취소 관련 사항

○ 합격예정자의 경우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

- 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
- ② 본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.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국가기관 또는 청소년상담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8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
- 9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
- 10.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
 - 나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
 -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- ③ 해당 직급의 정년연령(만60세)을 초과하는 사람
- ④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
- ⑤ 부정합격자(부정행위를 통해 채용된 자)

□ 문의처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(051-662-3066, 3063)

NCS기반 채용직무 명세서

직종	상담직	직무	청소년상담복지
분류 체계	대분류	07.사회복지·종교	
	중분류	02.상담	
	소분류	02.청소년지도	
	세분류	02.청소년상담복지	
직무정의	○ 청소년상담복지는 청소년의 행복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과 그 주변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서비스, 보호 및 위기개입, 지역사회 연계망 운영, 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.		
능력단위	○ 심리평가, 집단상담, 청소년부모상담, 상담자문, 상담수퍼비전, 청소년상담연구개발, 내담자 응대, 접수면접, 상담준비, 개인상담, 전화상담, 게시판·메일상담, 채팅상담, 위기상황확인, 위기지원, 진로상담, 진학 및 취업지원, 생활기술교육, 청소년 사례 통합관리 준비, 청소년 사례 통합관리 운영, 청소년 교육훈련 준비, 청소년 교육 운영 및 평가,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, 지역자원 연계 협력		
관련 자격	○ 청소년상담사, 사회복지사, 정신보건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사, 상담심리사, 전문상담사, 임상심리전문가		
관련 전공	○ 교육, 상담·심리, 사회사업(복지), 정신의학, 청소년, 아동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분야		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능력단위별 필요 지식·기술·태도, 직업기초능력 등 NCS직무 관련 세부사항은 NCS홈페이지(www.ncs.go.kr) 참고 ○ 특정직(사이버상담) 사이버상담원 세부 직무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청소년에게 친숙한 PC 및 모바일 접근이 가능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, 부모 등에게 가족갈등, 대인관계, 학업중단, 가출, 진로 등의 호소문제에 대한 온라인 상담서비스(채팅상담, 비밀 및 연계 게시판 상담, 위기개입, 사이버아웃리치 등)를 제공 		

경력환산 기준표

직종	구분	경 력	환산비율
상담직	"갑" 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4년제 대학 상담기관 전임교원 이상의 심리·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 ○국가기관, 국제기구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, 공공단체 등에서 상임직원의 심리·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 ○초등 및 중등학교 동일직종 전임교원 	100%
	"을" 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4년제 대학 상담기관 시간선택제 근무 이상의 심리·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 ○국가기관, 국제기구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, 공공단체 등에서 시간선택제 근무 이상의 심리·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 ○관련분야 전문기관 상임직원의 심리·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 ○초등 및 중등학교 전임교원 	80%
	"병" 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그 외 동일직종 근무경력 ○관련분야 전문기관 시간선택제 근무 이상의 심리·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 ○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관련분야 경력 	50%

가. 관련분야는 교육, 상담·심리, 사회사업(복지), 정신의학, 청소년, 아동 등으로 한다.

나. 관련분야 전문기관은 개인이 설립한 법인기관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 한다.